

6. 住宅建設基準等에 關한 規定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第1993-58호 1993. 4. 23

1. 개정이유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구매시설·유치원등 일부복리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에 따라 일정규모(세대당 0.3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규모)의 구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지실정에 따라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

나.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

에 따라 일정규모(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규모)이상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므로써, 사업주체가 단지의 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 주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